

인천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6809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6809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소2357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고은

피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B

변론종결 2024. 3. 13.

판결선고 2024. 4. 2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소2357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0. 7. 법무법인인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총 5건의 사건(이하 ‘이 사건 위임사건’이라 하고, 각각 지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 기재에 의한다)을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65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특약사항으로 “1. 피고소인들과 합의 시 그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2. 미 합의시 피고소인들이 구속될 경우 각 1인당 금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순번	사건명	당사자	경과
1	인천지법 C	원고 A, 피고 D, E, F, G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B)	2021.12.7. 강제조정
2	인천지법 H	원고 A, 피고 I, G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J)	2021.11.23.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J 사임, 2022.3.31. 소취하
3	부산지청 K, L	고소인 A, 피고소인 G, I, M (고소인대리인 법무법인 B)	2022.1.3. 고소취하
4	수원지법 N	피고인 E, O (피해자변호사 법무법인 B)	2022.8.26. 피해자변호사 사임, 2023.1.27. 무죄 (항소심 계속중)
5	불상	고소인 A, 피고소인 G (고소인대리인 법무법인 B)	불송치결정

나. 피고 소속 P 변호사는 이 사건 1) 위임사건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2021. 12. 7.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 소속 P 변호사는 2021. 12. 30.경 이 사건 2), 3) 위임사건의 상대방인 I, G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I로부터 합의금 2억 4,300만 원(사기 피해금액 원금 2억 원 + 이자 4,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 사건 2), 3) 위임사건의 성공보수로 1,870만 원[= 1,700만 원(24,300만 원×7%) + 부가가치세 1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2) 위임사건에 대하여 2022. 3. 31.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3) 위임사건에 대하여 2022. 1. 3.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부터 9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I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피고가 소송수행을 하지 않은 기존 형사사건(D에 65억 편취당했다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J을 통해 G, Q, I, E 등에 대하여 사기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 I가 합의를 먼저 제안함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기여한 바가 적어 성공보수금 약정 적용이 부당하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임의 공제한 1,870만 원의 성공보수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2, 3) 위임사건의 수임사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사건에서 피고는 관련 사건인 민형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민사 및 형사사건인 이 사건 2, 3) 위임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수임사무를 처리한 사실[피고는 이 사건 2) 위임사건에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2021. 12. 30.경 1 등과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2, 3) 위임사건을 함께 처리한 후 2022. 1. 3. 3) 위임사건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위 2) 위임사건의 사건번호를 전달받아 2022. 3. 31.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2, 3) 위임사건의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3) 위임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형사성공보수약정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사건

위임사건의 “특약사항 1. 피고소인들과 합의 시 그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지불”한다는 약정은 피고가 민사 및 형사사건을 함께 수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그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약정이 형사성공보수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위 약정의 보수액(합의금의 7%)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으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위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정인, 판사 유성혜, 판사 서희경